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1106
----------	-------------

제안연월일 : 2024년 3월 8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서울역 권리주체와 관리주체 문제, 서울시 실·국 및 다른 기관의 행정업무 중복 및 협조 필요성 문제, 노숙인 이동권 제한 문제, 집회 및 신고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유관기관 협조 관련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집회 및 시위’, ‘금주구역 지정’ 등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를 삭제하고 ‘시장의 책무’(안 제3조), ‘관련기관 협조’(안 제4조)를 상위법령과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수정함.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및 안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역광장의 건
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다자간의 협력에 동참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기관 협조) 시장은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한국철도공사, 관할 경찰서,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과의 업무 협조를 위하여 정기
적인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8조를 안 제5조
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서울특별시의 이미지 제고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의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정안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역광장”이란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 일원에 광장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한다.	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다자간의 협력에 동참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u>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다자간의 협력에 동참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② 서울역광장 이용자는 건전한 시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소음 등의 유발을 최소화하여 시민이 쾌적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제4조(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 사업의 지원) 시장은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관련기관 협조) 시장은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한국철도공사, 관할 경찰서, 자치구, 관련

1. 서울역광장에서의 금연 및 절주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

2. 서울역광장 노숙인의 주거와 보호 등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제5조(집회 및 시위) ① 서울역광장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울역광장에서 누구든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등을 주최하거나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주구역 지정) 시장은 음주 폐해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역광장을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협력의 강화) ① 시장은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한국철도공사, 관할 경찰서, 자치구, 관련 기

기관 및 단체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과의 업무 협조를 위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제>

<삭제>

<삭제>

관 및 단체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과의 협력에 동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시장은 서울역광장의 이미지 제고와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관한 시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대시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안 제8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서울특별시의 이미지 제고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의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역광장”이란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 일원에 광장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다자간의 협력에 동참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기관 협조) 시장은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한국철도공사, 관할 경찰서,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과의 업무 협조를 위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시장은 서울역광장의 이미지 제고와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관한 시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대시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